

**축산으로 인한 흥성지역
환경오염 및 주민피해 조사,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

2015년 9월 30일

예산흥성환경운동연합

축산으로 인한 홍성지역 환경오염 및 주민피해 조사,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

- 연구주제 : 축산으로 인한 홍성지역 환경오염 및 주민피해 조사, 개선방안 연구
- 연구기간 : 2015년 4월 20일 ~ 9월 30일
- 연구주체 :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 본 연구에서 거론된 마을과 주민 이름은 가급적 직접 거명하지 않았으면 하는 주민들의 부탁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구배경 (이하 신청서 제출 시 내용임)
 - 홍성의 가축사육두수는 전국 최고 수준이며 대규모/기업형 축사 운영으로 인한 환경오염, 주민 간 갈등, 구제역 등의 피해가 심각함.
 - 축산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주민 피해사태가 환경단체로 계속 접수됨.
 - 2014년 8월, 홍성군은 '가축사육제한조례'를 개정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에는 어려움이 있어 지역 주민 스스로 마을의 축사주변을 모니터링해 더 이상의 피해를 막으려고 함.
- 연구모임 목표 (이하 신청서 제출 시 내용임)
 - 현행 가축사육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주민 건강 피해 조사
 - 대규모/기업형 축사 신축 및 운영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 제기
 - 지역 주민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 권리 보장
 - 마을 환경에 대해 제대로 알고 지킬 수 있는 지역주민 자치역량 강화
 - 지역 내 지속가능한 축산을 실천하는 농가 발굴, 대책에 반영

우리 동네에 축사가 들어온다는데

한창전 (금마 마사마을 주민)

똥냄새 풍기던 내고향 - 흥동 월현리 개월마을
그 냄새 정말 싫어
매일 매일 그 악취 그 파리 싫어

멀리멀리 똥냄새 없는 곳
똥파리 없는 곳
소박한 마음들이 모여 있는 곳
어찌어찌 찾아와 자리 잡았는데

그 똥냄새 다시 말으라 하네

왜 우린 시골이라는 이유로
그 똥냄새 거절하면 안 되나

그 옛날 한두 마리 외양간 소똥냄새
고향의 냄새로 향수에 젖은 적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의 백 배 천 배
고향의 냄새라기보단
어느 높고 긴 제조공장 굴뚝의 매연보다 독하네
높고 길던 공장 굴뚝의 매연은
그래도 수백 아니 수천의 밥줄이었는데

한두 사람의 이익을 위해
수백, 수천 마리의 짐승들이 배출하는 똥오줌
그 수백 마리가 병들었을 때의 비참한 최후

수백, 수천 먹여 살리던 길고도 높은 공장굴뚝
그 공장의 어마어마한 폐수에 지지 않아
동네사람들 몸과 마음 썩게 하네.

축산으로 인한 흥성지역 환경오염 및 주민피해 조사, 개선방안 연구

■ 연구모임 활동내역

- 4월 22일 : 연구모임(1) 연구사업 선정 관련 기획회의
 - 주요내용 : 사업신청내용 공유 및 역할분담, 연구모임 참여자 조정연구방향 확인, 민원 접수사항 현장조사 계획집중 조사 마을 선정 - 흥동 산양마을

- 4월 ~ 6월 : 축산으로 인한 민원 접수 및 현장조사
 - 흥동면 산양마을, 갈산면 동성리, 금마면 마사마을
 - 흥동천 주변, 흥성읍 신동아아파트, 장곡면 장곡저수지 등

- 5월 28일 : 연구모임(2차) 조사내용 공유 및 주민교육 기획
 - 주요내용 : 민원 접수사항 및 현장조사내용 공유

축산민원이 있는 지역 중심으로 주민간담회 기획

- 6월 22일 : 흥성군 행정사무감사 참관 (축산과)
 - 특이사항 : 축산과 운영, 직원 17명 중 2명만 관리감독직

- 6월 23일 : 축산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주민피해 조사를 위한 간담회 개최
 - 저녁 7시 30분, 흥동 마을활력소

- 6월 23일 : 연구모임(3) 주민교육 계획 및 연구방향 조정
 - 주요내용 : 간담회 내용을 토대로 타 지역 사례 조사 및 강연 추진

- 태안 인평리 수질오염문제 (홍재표 의원, 서산태안환경연합 협조)
- 예산 운곡리 대형축사문제 (김영우 국장, 예산흥성환경연합 협조)

▪ **전북의 해결사례 (연구모임 자료조사 및 통화), 강연 추진**

- 6월 24일 : 홍성군 행정사무감사 참관 (환경과)
-주요내용 : 민원 해결의 어려움. 환경과, 악취측정기 구비(민간 활용 불가)
- 6월 29일 : 주민간담회 관련 기사 보도 (기사 별첨1)
-<축산문제 해결 주민운동 시작>, 홍성신문, 이번영 대기자
- 7월 16일 : 태안군 인평리, 축사로 인한 주민건강권 침해 사례 조사
- 8월 19일 : <축산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주민피해,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해결했나> 강연 (이정현, 전북환경연합)
-오후 7시 30분, 흥동 마을활력소
- 8월 19일 : 연구모임(4) 전북 사례의 우리 지역 적용가능성 검토
-주요내용 : 도청 소재지인 점을 활용, 이미지 및 삶의 질 향상 촉구
문제의 심각성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수질, 악취 문제로 접근
축산으로 인한 하천 오염문제 강연 기획
- 8월 24일 : 타지역 사례 강연 관련 기사 보도 (기사 별첨2)
-<“돈사 2km 거리제한했더니 민원 사라져”, 환경연합 축산토론회 “집단민원 제기가 문제 해결 실마리”>, 홍성신문, 이번영 대기자
- 9월 1일 : 청양 축산문제해결 사례조사 및 하천 답사
- 9월 9일 : <축산과 하천> 강연 (복권승, 충남도량살리기협의회)
-오후 7시 30분, 흥동 마을활력소
- 9월 9일 : 연구모임(5) 하천을 중심으로 축산문제 살펴보기
-참석자 : 김교진 김지영 신은미 유정원 유희경 정영희

-주요내용 : 근처 청양, 예산, 당진 등과 정보 및 활동 공유 가능성 모색
 하천 모니터링 필요성 합의
 직접 수질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필요지역에 간이측정기 배포

- 9월 10일 : 하천 모니터링 교육 (김시용, 홍동천사 회원) (수질측정기록지 별첨3)
 - ‘홍동천을 사랑하는 사람들’ 활동내용 공유
 - 하천 모니터링 방법 및 결과 분석 교육

- 9월 14일 : 하천 모니터링(1) - 홍동천 주변(주요지점별로)

- 9월 21일 : 하천 모니터링(2) - 홍동면 산양마을, 장곡면 지정리

- 9월 21일 : 연구모임(6) 조사활동 의견수렴
 - - 주요내용 : 지금까지의 조사 및 연구내용은 환경연합에서 정리함.

악취 측정이 필요하나 추후 측정기를 구입한 후 시도하기로.
 행정과의 협의, 협력 필요성 대두
 연구기관 차원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조사활동 절실

■ 주요 조사내용

1) 홍성군 현황

■ 주요 가축 사육현황 (2015년 6월말 기준)

구분	한·육우	젖소	돼지	닭
호 수	2,313	72	297	514
두 수	54,709	4,266	506,579	3,405,075
도내 점유율	15.1%	6.0%	23.2%	8.1%
점유순위	1위	5위	1위	6위

▪ **홍성군 가축사육 거리 제한 (m)**

구분	소	젖소	돼지	닭	오리	개
홍성군 조례	100	100	200	200	200	200
환경부 권고	100	250	500	500	500	500
전북도 준칙	500	500	2,000	1,000	1,000	1,000

(*) 홍성군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참고

제8조 제1항 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주거밀집지역으로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가축사육시설 외곽 200미터(소, 말, 젖소는 100미터) 이내로 한다.(개정 2014.8.18.)

③ 군수는 제1항의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해당 하지 아니하더라도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거밀집지역의 주택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1,000미터 이내지역에 대하여 가축분뇨 배출시설(신고대상 규모 이상의 축사)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 부지가 속한 마을 세대주 70퍼센트 이상과 피해가 예상되는 인접마을 세대주 100퍼센트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14.8.18.>

2) 축산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주민피해 사례

홍동면 산양마을

마을 내 3개의 대형축사가 있음(육계 약 30만수, 산란계 15만수, 소 400두). 2014년 대형 계사를 신축하는 과정에서 건축폐기물 불법 소각 및 무단 폐기 등이 있었으며, 수질 오염, 농산물 피해 등이 심각함. 2014년 7월에는 축사를 완공한 후 폐기 건축자재(우레탄폼)를 대량 불법 소각해 주민들이 눈이 따갑거나 구토 증세가 있는 등 건강상의 피해가 있었음. 또한 2013년 생태지도 작성 시 발견되었던 가재나 버들치가 사라져, 주민들은 축사 운영과의 연관성 의심. 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를 검토해 오류를 발견함.¹⁾ 야간/새벽시간을 이용해 일주일 동안 출하하는데 차량 진동과 소음으로 인해 주민들 스트레스 호소. 닭 수송, 포장을 덮지 않은 채 수십 트럭을 실어나가는 경우도 있어 농가에 넣어놓은 고추와 쌀 등의 농산물이 깃털과 먼지, 닭똥 등에 오염됨.

1) 환경영향평가의 오류와 형식성 문제는 장곡 지정리 문제 등 다른 사안에서도 발견된다.

갈산면 동성리

모든 2천 5백 마리를 키우는 농장이 마을 가까이 위치. 흐린 날에는 창문을 열고 밥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악취가 심함. 농사일을 하다가 음료를 마시던 마을가게 앞은 악취 때문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가게주인은 가게문을 열어놓고 장사를 할 수 없는 상황.²⁾ 비올 때 폐수 방류, 주말에는 불법행위가 심심찮게 일어남. 아침이면 하천 풀썩에 부유물 끼어있는 것을 주민들이 여러차례 목격. 군청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으나 제대로 해결된 적이 없음.

장곡면 지정리

2013년 계사 신축 반대운동을 펼침. 주민대책위가 임목폐기물 처리, 공사자체 기준, 콘크리트 방수시설, 환풍구 팬 방향 등을 꼼꼼하게 감시. 국가권익위에 진정까지 냈으나 신축을 막지는 못함. 저감시설 등 주민 요구 반영.

금마면 마사마을

작년 8월 가축사육제한조례 개정 직전에 허가를 5천 평 규모의 우사가 올봄 신축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의 강한 반대로 공사 직전 농장주와 합의, 4년 후 주민들 50%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짓기로. 3천 평 규모의 목초지 조성으로 급경사 지역 벌목. 예정지는 마을식수원으로부터 불과 500m 거리에 위치. 주민과 마을의 협의가 이루어진 이례적인 사례.

그 외 피해사례 및 문제점

- 지붕이나 가로막이 없이 방치된 분뇨가 하천으로 유입
- 가축/분뇨 수송 시 생활권 가까이 먼지, 악취, 소음 발생
- 신축 과정에서의 불법 소각, 무단 폐기 등 불법행위
- 장마철 축산오폐수 무단방류로 인한 물고기 폐사³⁾
- 밀식사육으로 인해 허가 두수보다 많이 사육하는 경우 다수
- 일부 과수농가, 파리 개체수 증가에 따른 탄저병 우려⁴⁾
-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등의 위험 내재, 살처분 후 매몰 시식수원 오염 우려

2) 홍성신문, 9월 24일자, <축사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 동성리 장재용 씨는 “이 곳은 바닷바람과 육지바람이 만나는 곳으로 평상시에 바람이 많이 분다. 바람이 불면 축사에서 풍기는 악취가 온 마을을 뒤덮는다”고 말했다. 한 주민은 “축사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 축산업자들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축산업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3) 홍성신문, 7월 16일자 <축산의 검은 그림자, 무단방류> (광천) 박준선 삼봉마을 이장은 “몇 년째 장마철만 되면 강물에서 악취가 풍기고 물고기들이 폐죽음을 당하고 있다”며 “비만 오면 하천 상류에서 축산폐수를 흘러 보내 심한 악취로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행정기관에서 의지를 갖고 지속적으로 단속해 달라”고 주문했다.

4) 무한신문, 9월 21일자, <관광체험마을 대규모 축사 ‘날벼락’> “알토란사과마을의 특산품인 사과에 치명적인 탄저병을 매개하는 파리로 인해 농약을 살포하는 횟수가 늘어나 결국 주민들의 삶의 터전인 친환경농업도 붕괴될 것”이라며 “조상 대대로 이어온 문전옥답과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 대형축사를 막아낼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천명했다.

- 무허가 증축 목인으로 실제보다 더 많은 두수를 더 부실하게 운영
-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경우 관리, 감시가 전혀 되지 않음.
- 처벌이 약해, 처벌을 감수하고 불법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함.
-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외국인 노동자가 농장에 고용된 경우, 관리 소홀의 우려가 있고 민원도 전달되기 어려움.
- 위탁사육 증가 추세. 홍성군의 경우, 돼지농가의 40%가 위탁경영. 업체에서 개인에게 두수당 가격을 주는데, 분노처리를 알아서 할 경우 비용 추가. 공적 책임이 가축사육 마지막 단계의 개인에게 전가됨.
- 농장주가 농장 소재 아닌 다른 지역에 살아 주민들이 느끼는 박탈감.
- 지역토박이가 운영하는 농장의 경우, 문제가 있어도 민원을 넣기 어렵고 민원을 넣는다고 해도 민원인의 신분이 보장되지 않아 문제 해결 어려움.
- 마을이미지 저하로 인구 유입이 감소
- 축사가 들어선 경우, 그 근처에 있는 땅값이 하락하거나 매매가 어려움.
- 지하수 오염으로 인해, 상수도 제한급수⁵⁾ 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대안이 없음.
- 토지 매입, 허가 관련해 동네사람들이 관여, 마을분란이 되기도 함. 마을주민명의로 허가를 받아서 대기업에 판 사례도 있음.



그림 1) 급경사에 조성되고 있는 목초지. 임목폐기물 불법처리가 의심됨.



그림 2) 지붕, 가로막이 없이 방치된 분뇨



그림 3 축사 신축과정에서 불법으로 소각된 폐기물



그림 4) 주민간담회



그림 5) 부유물이 가득한 홍동천

5) 홍성군, 2015년 10월부터 2016년 6월까지

3) 타 지역의 축산문제 개선 사례



전북사례

- (전북)도 차원에서 의지를 가지고 현황을 정밀히 파악하고 개선한 사례
- 가축사육제한조례, 도 준칙 기준으로 개정(민원, 신규 비율 70% 이상 감소)
- 민관합동조사단이 해결책 모색 (행정, 축산인, 시민단체 포함)
- 가축분뇨처리에 대한 관리감독과 더불어 바이오플랜트사업 제시

청양사례

- 하천 지키기를 통해 축산으로 인한 수질오염을 방지한 사례

태안사례

- 지하수오염으로 인한 주민 건강권 침해, 인허가과정 상의 문제로 농장주와 주민이 법정공방까지 간 사례⁶⁾

3) 주민 참여/자치역량 강화 활동

- 주민간담회, 현장조사를 통해 마을의 자연생태를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의 타당한 문제 제기 수렴
- 타 지역 사례 강연, 하천과 모니터링 강연 등의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 사진 촬영, 기록, 적극적인 도움 요청 등 자발적 모니터링체계 마련



그림 7) 주민들의 축사신축 반대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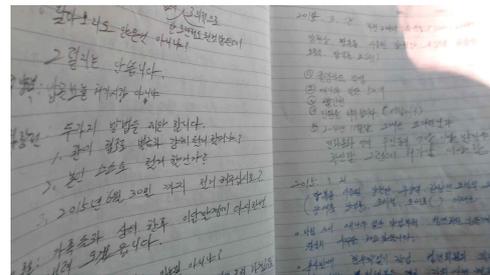


그림 8) 축사신축의 문제점과 축사반대활동 내역을 적은 노트

6) 태안신문, 2013년 7월 12일자 <태안 인평리 주민살리기에 정지권도 발벗고 나서> 조한기 위원장은 성명서에서 “지난 10년 동안 인평2리 전체 59가구 중 31가구에서 암 환자가 발생했지만, 군민의 보건과 건강을 책임져야 할 태안군청이 무책임한 태도로 방관하고 있다”며, “인평리 주민들은 암 발병 원인으로 오염된 지하수를 지목하고 원인규명과 대책을 요구하고 있지만, 태안군청은 가구당 2리터짜리 생수 6병을 지급했을 뿐, 역학조사는 고사하고 현장조차 방문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정부 조사결과 등으로 인평리 지하수가 질산성질소에 오염된 것이 밝혀졌다”며 “한번 질산성질소에 오염된 지하수는 자연적인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만큼, 태안군청이 발 벗고 나서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 결론 및 개선방향

1) 축사의 신규 진입 제한 및 관리감독 철저

- 홍성군의 가축사육량은 이미 한계치에 다다랐으며, 행정, 주민 모두가 심각한 문제로 인지하고 있음. 앞으로 신규 축사, 특히 대규모 축사나 위탁형 축사는 신축을 까다롭게 하고 철저히 감독해야 함.
- 행정이 의지를 가지고 관여할 경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쉽게 해결될 가능성 높음(전북도 사례 참고). 가축사육제한 조례 개정 등 추진.
- 인허가 시 법규정만을 따질 게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 자연생태계,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성 등을 고려해 다각적인 검토를 할 수 있는 의견수렴 절차를 마련.⁷⁾ 일단 허가가 나면 문제가 있더라도 바로 잡기 어렵고, 정작 농장 가까이 사는 주민들의 민원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인허가 전에 마을주민에게 공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필요도 있음.⁸⁾
- 축사 관련 민원은 시의성이 있는만큼 바로 출동해 현장을 확인하고 강력하게 조치해야 함(인원 배치 필요, 전북의 민원버스 사례 참고). 민원이 없어도 수시로 축산농가를 방문해 농장을 점검하고 축산농가와 소통해야.
- 지역 축사지도 제작, 민원발생 시 신속히 출동하고, 오염원 확인이 용이하도록.
- 가축 대량 출하 시, 밤시간대 수송 제한 필요.

2) 마을자치와 주민참여 존중

- 마을규약 제정 : 축사를 비롯한 환경오염시설, 개발행위 등 주민들의 주거권, 거주권을 침해하는 시설물에 대해 마을 내에서의 협의 및 합의를 통해 마을과 마을공동체를 지키도록 함(예산군 대치리 사례 참고)⁹⁾.

7) 지정리 주민회 <국민권익위원회 제출 의견서> 3. 지정리 주민회는 2014년 1월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신축 계사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알게 되었고, 계사 신축과 관련된 민원을 수차례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홍성군은 민원에 대한 적절한 대책 마련없이 법규정에 따라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을 주었습니다.

8) 무한신문, 9월 21일자 <체협관광마을에 대규모 축사 '날벼락'> 알토란권역농촌마을종합개발추진위원회 김영주 위원장은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설계는 홍성에 맡기는 등 암암리에 추진됐다. 공무원이 송씨에게 신축부지에 대해 조언했다는 얘기도 들린다”며 “송씨를 만나 설득하고 호소도 했지만 건축허가를 신청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9) 덕산면 대치2리 <마을자치규약> 중 15항, 제14조 환경관리

① 환경관리의 범위는 아래 각 호에 해당된다.

1. 자연환경(산림벌채, 분묘의 조성, 전답의 조성, 구거 소하천의 훼손 및 변경 행위, 석산 및 광산개발행위)
2. 생산시설물(축사, 창고, 공장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을 축조하는 행위)
3. 주거 및 상업관련시설(주택, 연수원, 요양원, 식당, 숙박시설, 놀이시설 및 이에 부수되는 시설의 건축 및 대수선행위)
4. 가축사육(소, 돼지 등)제한

② 마을구역 내에서 ①과 관련된 행위(기존의 가축 수를 늘리거나 축사면적을 넓히는 행위 포함)를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허가나 신고 절차와는 별도로 사전에 “마을 환경관리위원회”의 심의와 동의를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4) 지역성을 반영한 문제제기 필요

- 내포신도시가 지향하는 친환경도시 조성 과 배치될 수 있음.¹⁰⁾
-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악취에 대한 집중관리방식¹¹⁾을 홍성 전지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내포신도시와 홍성군 전지역 비슷한 수준으로 적용.
- 물/토양오염으로 인한 홍성 유기농업 피해 공론화
- 상습 악취발생 지역에 대해서는 ‘축산형 악취관리지역’ 지정 고려

5) 적정규모 및 운영방식 모델링작업

- 홍성(충남도) 현실에 맞고 환경오염과 주민피해를 최소화하며 소득이 보장되는, 농장의 적정규모와 운영시스템 연구 및 설정(홍성식 농장 모델링)
- 축산농가 대상 환경오염 최소화 및 개선방향 교육 의무화
- 소규모 바이오매스시설 시도, 지원

■ 연구의 성과

- 축산으로 인한 문제점 공론화 및 심각성 공유
- 악취, 수질오염 이외의 다양한 오염행태와 주민피해 사례 조사
- 마을 환경에 대해 제대로 알고 지킬 수 있는 지역주민 자치역량 강화
- 타 지역(전북) 사례를 통해, 군이나 마을 단위가 아닌 충남도의 역할 인지
- 축산문제를 지역 하천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시키고 모임을 구성.
- 축산문제 관련해 인근 지역과의 교류와 협력체계 구축
- 군청이 아니어도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여지 마련

■ 연구모임의 추후 활동방향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자원봉사센터, 농업기술센터 등과 협력
- 소규모 바이오플랜트 + 적정기술 결합 시도
- 청양, 예산 지역과 활동 공유, 교류
- 간이측정기구들 구비하여 오염정도 상시로 측정, 민원에 대처.

10) 내포타임즈, 9월 7일자 <내포 뒤덮은 악취, 언제 걷히나...> 3년에 걸친 악취 저감사업에도 내포신도시 거주민들은 여전히 가축분뇨 악취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군에 따르면 지난 7월 말부터 현재까지 하루에 적게는 1건, 많게는 3~4건의 내포신도시 축사 악취 관련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신도시 주민들의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인 ‘내포친사’에도 축사 악취와 관련한 글이 한 달 새 7건이 올라왔다. 글쓴이 ‘내포0000’은 “에어컨 틀고 잘 때는 몰랐는데 요즘은 밤에 선선하길래 문을 열어놓고 자는데 새벽마다 냄새 때문에 깨서 문을 닫고 잔다”며 “한동안 냄새가 잘 안 나는 것 같더니 요즘 너무 심하다. 미치겠다”고 토로했다. 내포신도시 한 주민도 댓글을 통해 “냄새 때문에 새벽 4시쯤인가 깨서 문 닫고 환풍기 돌려놨다”며 “요즘 같아서는 다시 이사 가고 싶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11) 9월 23일 열린 <내포신도시 축산시설 악취관리를 위한 토론회> 내용 참고

- 생협 등 축산문제에 관심이 있고 관련 있는 지역 단체들을 중심으로 합동조사위원회 구성 예정

■ 연구의 미비한 점

- 단기간 내 이슈발굴 및 모니터링 병행의 한계, 행정-축산농가의 부담으로 토론회 개최 성사 안 됨(올 연말 충남도 환경포럼에서 개최 예정)
- 현장사례 중심이다보니 정확한 수치와 법률을 꼼꼼히 따지지 못함.
- 악취와 토양은 측정이 쉽지 않아 추후 측정기를 구입하거나 전문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함.

■ 추후 연구과제들 (충남연구원 등 연구기관 담당)

- 축산 관련 주변시설(가공, 폐기물, 퇴비가공시설 등)에 대한 관리
- 가축사육제한 거리 및 축종별 사육면적 확대 관련 도 준칙안 마련
- 밀식사육, 사료 등 동물권(복지) 차원에서의 접근
- 축사의 신축부터 폐사까지, 혹은 오염이 예상되는 지역 장기연구
- 축사밀집지역 주민 건강상태 및 스트레스정도 조사
- 환경영향평가 개선을 위한 연구 (장곡면 지정리 사례 참고)¹²⁾
- 가축사육 위탁운영에 대한 문제점 조사

■ 별첨자료 목록

- 별첨1) 홍성신문 기사 1
- 별첨2) 홍성신문 기사 2

¹²⁾지정리 주민회 <국민권익위원회 제출 의견서> 4. 또한 지정리 주민회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악취예측모델링 및 계분 발생량 처리계획 부분에서 4개 항목에서 오류 및 부실한 작성이 확인되었습니다.

별첨1) 홍성신문 6월 29일자 기사

축산문제 해결 주민운동 시작

환경운동연합 주도 피해주민 간담회 개최
군단위 대책모임 결성 예정 ... 공동대응 방침
축산 악취·해충 불만 공식표출 ... 파장 주목

환경농업의 메카 홍성군에서 축산으로 인한 악취와 파리가 들끓는 모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촉구하는 군 단위 시민운동이 시작됐다. 그동안 지역경제의 버팀목이며 축산농가의 생존권 문제라는 현실 때문에 피해를 보면서도 말을 못하고 숨 죽이며 살던 다수 주민들의 불만이 밖으로 표출되는 상황이어서 그 파장과 결과가 주목된다.

지난 23일 저녁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활동가 신은미)이 주도하는 가운데 홍동면 마을활력소에서 축산으로 인한 피해를 입는 주민 10여 명이 모여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홍동면 산양마을 유희경 씨가 축산 피해 사례를 발표하고 장곡면 한울마을 박용석 씨와 금마면 마사마을 한창전 씨가 주민운동으로 축산 피해를 줄인 사례를 발표한 뒤 참가자 전체 토론으로 진행됐다.

홍동 산양마을은 마을 내 3개의 축사로 인한 수질 오염 및 농산물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최근 또 다른 대형 계사 신축으로 주민과 갈등을 빚고 있으며 불법 소각 및 무단 폐기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장곡 한울마을은 2013년 마을 내 대형 계사 신축에 대해 주민 반대운동을 펴 피해를 줄이고 주민의 요구를 반영했다는 것이다. 금마 마사마을은 올해 봄 5000평 규모의 우사가 신축될 예정이었으나 허가 직전 주민들의 강한 반대로 농장주와 협의, 4년 후 주민 50% 이상 동의를 얻을 경우 짓기로 연기, 합의한 사례가 보고됐다.

전체 토론에서는 홍성군 전체가 축산 오폐수로 인한 수질 오염과 악취, 파리 등 피해가 심각해 주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며 '환경농업의 메카' 홍성에 대한 이미지에 악영향이 크다는데 입을 모았다. 특히 환경농업의 발상지 홍동면의 축산 피해는 가장 심각한 수준으로 지적됐다. 최근엔 면의 얼굴인 들판 중앙에 초대형 축사들이 여럿 들어와 악취와 파리 모기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이다. 홍동면 소재지 공공건물과 학교, 식당 등에도 기압이 낮은 날이면 악취와 파리가 많아 문을 열지 못하며 외국인을 비롯해 방문을 희망하는 외지인들을 오지 못하게 만류하는 사례도 빈번하

다는 것. 홍성읍에서 홍동면으로 진입하는 군도변, 홍동면 소재지 축사에서 풍기는 악취와 파리, 소음 피해가 심각해 군청의 대책이 절실하다는 의견들도 제시됐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 매월 한 차례씩 축산 피해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갖기로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환경운동연합과 함께 주민피해 대책 군 단위 모임을 결성해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지속적인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홍성군은 올해 1월 1일 기준 전체 세대의 0.8%에 해당되는 305농가에서 49만3840마리의 돼지를 사육, 충남도 21.7%, 전국 4.7%를 점유하고 있다. 한우는 2527농가에서 5만7265마리를 사육 충남도 14.9%를 점유하며 양계는 416농가에서 383만5013수를 길러 충남도 7.9%를 차지하고 있다. 홍성군의 자료에 의하면 이중 소는 82.6%가 50두 미만 소농이나 돼지는 1000두 미만 소농이 17.7%, 닭은 15.8%를 차지해 기업형 축산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돼지 사육농가의 약 40%가 외지 자본에 의한 위탁농가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홍성군은 내년에도 축산 분야에 130억 원의 국비와 지방비를 지원하는 등 해마다 축산진흥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저작권자 © 홍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별첨2) 홍성신문 8월 24일자 기사

“돈사 2km 거리제한했더니 민원 사라져”

환경연합 축산토론회 “집단민원 제기가 문제 해결 실마리”

가축사육 거리 제한을 강화한 결과 피해 주민의 집단민원이 거의 사라졌다는 사례가 나왔다.

예산홍성환경연합은 지난 19일 홍성마을 활력소에서 ‘가축 사육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주민피해,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해결했나?’라는 주제로 이정현 전라북도환경연합 사무처장을 초청, 전북도 사례를 듣고 토론회를 했다. 이정현 사무처장은 이날 강연에서 “축산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근본적 대책은 가축 사육두수를 줄이는 것과 실효성 없는 정부보다 규제를 강화하는 조례를 만들어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며 효과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집단민원을 계속 발생시키는 것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된다”고 주장했다.

전북 완주군의 경우 축산 피해에 대한 민관합동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실태파악을 해 군정에 반영한다는 것이다. 완주군은 또 가축사육제한조례를 환경부 권고안 보다 4~5배 강화해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돈사 신축 제한 거리를 환경부는 500m로 권고하지만 완주군은 2km로 강화했으며 하천 부지 주변 30m 이내는 축사 신축을 금지하고 있다는 것. 완주군의 이같은 조례 강화는 전라북도의 준칙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13개 시·군(전주시 제외)중 정읍, 완주, 진안, 순창, 고창, 임실 6개 지방자치단체가 이 준칙에 따라 조례를 개정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조례 강화로 피해 민원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고 이정현 처장은 말했다. 정읍시는 지난해 축산 민원이 38건 발생했으나 올해는 현재까지 한 건도 없다는 것이다. 완주군은 지난해 20건의 축산피해 민원이 발생했으나 올해는 1건으로 줄어드는 등 대부분의 민원 발생이 없어 쾌적한 환경으로 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강연이 끝난 후 가진 토론회에서는 축산 공해와 관련 홍성 지역 일부의 주민 간 갈등이 우려되기도 했다. 지난 6월 23일 예산홍성환경연합에서 주최한 축산문제 좌담회에 참석한 주민이 제시한 문제점이 홍성신문에 보도되자 해당 축산인들이 발언자에게 “한 마을에 살며 그런 말을 제보할 수 있느냐”며 항의했다고 털어놓았다. 홍동면 운월리에 사는 귀농인 모씨는 지난해 마을 가운데 축사에서 분노와 악취가 심해 홍성군청에 찾아가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문의했다고 한다. 그러자 며칠 뒤 그 축산인이 찾아와 “나는 여기 사는 토박이인데 뒤에 온 당신이 왈가왈부할 수 있느냐”며 항의하더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군청에서는 민원 해결을 위한 노력은 하

지 않으며 주민간 싸움을 붙이고 있다고 참가자들은 입을 모았다.

<전라북도 축종별 가축사육거리제한 준칙 (단위 m)>

구분	소	젓소	돼지	닭	오리	개
환경부 권고	100	250	500	500	500	500
전북도 준칙	500	500	2,000	1,000	1,000	1,000

< 저작권자 © 홍성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